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의안번호 : 제 99-22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삭제.
- 수입증지는 지정된 판매인에게 증지액면 정액(액면가액의 95%)으로 판매한 후 판매인의 책임으로 관리되고 있음
- 판매인에게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게 하고, 장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입증지판매인의 장부 비치 및 장부검사 조항 삭제(개정안 제27조)
- 별지제6호 서식삭제

3. 검토의견

- 거창군수입증지조례는 1971년 7월 14일(조례 제168호) 제정되고 그동안 15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해 오던 중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내용중 지금까지 업자로부터 장부 비치하는 물론 소속공무원들도 장부 기록상태를 검사하지 않는 등, 실효성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판단되어 제27조 1, 2항과 이에 따른 별지6호 서식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참고사항

- 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조례·규칙·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제2차 정비계획(99.5.8)